

2019년도 제3차 재경위원회 회의결과

1. 일 시 : 2019. 11. 6.(수) 08:00~10:00

2. 장 소 :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

3. 참석현황 : 위원 30명 중 참석 24명, 불참 6명

참석위원(24)

○ 당연직(9) : 기획부총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연구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시설관리국장, 정보화본부장, 발전기금상임이사

○ 임명(위촉)직(15)

- 학내위원(9) : 김○○, 김○○, 이○○, 이○○, 안○○, 박○○, 최○○, 홍○○, 박○○

- 학외위원(6) : 강○○, 김○○, 박○○, 윤○○, 정○○, 이○○

불참위원(6)

○ 김○○, 김○○, 민○○, 김○○, 김○○, 최○○

※ 배석(5) : 교무과장, 예산과장, 인사교육과장 직무대리, 회계지원팀장, 이우정 회계사(한영회계법인)

4. 안 건

전차회의록 보고

○ 2019년 제2차 재경위원회 회의록

심의 안건

○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체계 개편 추진(안)

○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보수 규정 제정규정(안)

○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보수 규정 시행세칙 제정시행세칙(안)

○ 2018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(안)

보고 안건

- 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 일부개정

5. 회의 결과

가. 전차 회의록 보고

2019년 제2기 재경위원회 회의록

- 보고자 : 김지현 예산과장
- 2019년 제2차 재경위원회(2019.4.25.)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.

나. 보고 안건

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 일부개정

- 보고자 : 박용수 사무국장
- 안건요지
 - 2019년도 임금협약 사항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자격수당 신설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개정 등 직원 보수 관련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함.
- 제시된 의견
 - 신설된 자격수당에 대하여 향후 전문자격증의 범위 설정과 전문자격증 소지 직원의 인력 배치 문제에 관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다. 심의 안건

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체계 개편 추진(안)

- 보고자 : 신석민 교무처장
- 안건요지
 - 서울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본교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독자적인 교원 보수표 마련이 필요함.

- 연간 보수총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분의 비중을 높이고, 수당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학교 전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.

○ **제시된 의견**

- 현재의 보수체계로는 외부 석학들을 영입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. 이에 따라 연구 성과에 따라 연봉이 차등 지급되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보수 체계 개편이 필요함.
- 교원의 보수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심의하는 학사위 등 위원회는 내부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외부위원들이 포함된 서울대학교 발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뛰어난 석학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함.
- 향후 보수 체계 개편 안건에 보수 인상에 따른 재무부담의 증가현황 등을 수치화하여 보다 명확하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람.

○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심의함.

□ **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보수 규정 제정규정(안)**

○ **보고자** : 신석민 교무처장

○ **안전요지**

- 법인화 이후 부설학교 교원 보수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본교 부설학교 실정에 부합하는 자체 보수 규정을 제정함.

○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심의함.

□ **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보수 시행세칙 제정시행세칙(안)**

○ **보고자** : 신석민 교무처장

○ **안전요지**

- 「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교원 보수 규정(안)」에서 위임된 보수에 관한 사항과 보수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수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위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함.

-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심의함.

□ **2018회계연도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(안)**

- **보고자** : 김성래 회계지원팀장

- **안전요지**

- 2017년 6월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종합재무제표 작성 규칙」 제정

-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, 발전기금(단과대학 발전기금 포함)을 포함한 12개 법인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관련법인 간 내부의 전입·전출을 각각 상계하여 종합재무제표 작성함.

- **제시된 의견**

- 서울대학교는 각 회계마다 회계규칙이 상이하기에 회계 기준이 통일되어야 하고, 향후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 매뉴얼 작성이 필요함.

-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제약이 있는데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.

- **심의결과** : 원안대로 심의함.